

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환경정책과)

제출일 : 2021. 8.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유해야생동물 포획·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」 권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포획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,
- 포획포상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(안 제18조제3항 내지 제4항)
 - 구제보상금, 보상금액 → 포획포상금으로 용어 정비
- 나.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 조문 신설(안 제18조제5항)
- 다. 포획 허위 신고자 제재 강화 조문 신설(안 제18조제6항 내지 제7항)

3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「유해야생동물 포획·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」(2020. 5.)으로 제시된 권고사항 유해야생동물 ‘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’ 하고 ‘포획포상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’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